

경기도 공고 제2018 - 1269호

2018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18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구 분 | 분 야 | 임용 계급 | 선발 예정인원(명) | | |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 | | | 총계 | 양성 | 남 | 여 | | |
| 총 계 | | | 638 | 2 | 559 | 77 | | |
| 공개 경쟁 채용 | 소 방 | 소방사 | 240 | | 235 | 5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5과목 10:00~11:40 (100분) |
| 경력 경쟁 채용 | 소 계 | | 398 | 2 | 324 | 72 | | |
| | 항공조종사 | 소방위 | 3 | | 3 | |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 대체) | |
| | 항 해 사 | 소방사 | 5 | | 5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10:00~11:00 (60분) |
| | 기 관 사 | 소방사 | 5 | | 5 | | | |
| | 언론공보 | 소방사 | 2 | 2 | | | | |
| | 운항관리사 | 소방교 | 2 | | 2 | | | |
| | 화재조사 | 소방사 | 34 | | 34 | | | |
| | 소방특별조사 | 소방사 | 78 | | 78 | | | |
| | 구 급 상황관리사 | 소방교 | 3 | | 2 | 1 | | |
| | | 소방사 | 1 | | | 1 | | |
| | 구 급 | 소방사 | 190 | | 120 | 70 | | |
| | 구 조 | 소방사 | 70 | | 70 | | | |
| 정보통신 | 소방사 | 5 | | 5 | | | | |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을 하는 경우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시 험 일 정 | | | | |
|--------------|---------|----------------|--|----------------------------|--------------|
| | 구 분 | 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원서접수 | | 2. 19.(월) 09:00 ~ 2. 21.(수) 21:00 【3일간】 [취소기한 : 2. 28.(수) 21:00 까지] | | |
| |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3. 29.(목) | 4. 7.(토) | 4. 25.(수) |
| | | 실기시험 | | 시험일 별도공고 ※ 항공조종사 분야에 한함 | |
| | 제2차시험 | 체력시험 | 4. 25.(수) | 4. 30.(월) ~ 5. 11.(금) | 5. 25.(금)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제3차시험 | 신체검사 | 5. 25.(금) | 6. 4.(월) ~ 6. 20.(수)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 | 서류전형 (방문접수) | | | |
| | 인(적)성검사 | 면접위원 배부용 | | | |
|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7. 4.(수) | 7. 11.(수) ~ 7. 27.(금) | 8. 17.(금) (최종합격자)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불합격자(본인에 한함)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위탁업체인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
 - ※ 접수방법은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 **응시표 출력은 2018. 3. 29.(목)부터**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

나. 접수기간 : 2018. 2. 19.(월) 09:00부터 ~ 2. 21.(수) 21:00까지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됨.

다.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라.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교체 불가

마.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라며, 원서접수 종료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전일[2018. 4. 6.(금) 24:00]까지 유효하게 입력된 사항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치고,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특전 부분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는 2018. 2. 28.(수) 21:00까지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단, 결제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수수료 반환안내»

- ◇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 :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 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2018. 3. 29.(목)부터** 원서 접수 사이트 「(주)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합니다.

나. 거주지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① 2018년 1월 1일 전(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년 1월 1일 전(2017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1977. 1. 1. ~ 2000. 12. 31. |
| 경력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1977. 1. 1. ~ 1998. 12. 31. |
| <p>※ 항공조종사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2. 1. 1. ~ 1995. 12. 31.)</p> <p>※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 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p> | | |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 분 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항 조 종 사 (소방위) |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 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 항 해 사 (소방사) | ◇ 항해사(1급~5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
| 기 관 사 (소방사) | ◇ 기관사(1급~5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
| 언 론 공 보 (소방사)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운 항 관 리 사 (소방교)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3 ▶ 【붙임 7 참조】 |

| 분 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 화재조사 (소방사) | 소방 | ◇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화학 |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기계 | ◇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전기 | ◇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건축 | ◇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 유사 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소방·화학·기계·전기·건축 각 분야별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 |
| 소 방 특별조사 (소방사) | 소방 | ◇ 소방 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 분야 자격증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
| | 화학 | ◇ 화학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 직무분야 자격증 : 화공기술사·위험물기능장·화공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학분석기사·생물공학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
| | 건축 |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건축구조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축목재시공기능장·건축일반시공기능장·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목공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방수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 |
| | 전기 | ◇ 전기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 직무분야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방송배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전기철도기술사·철도신호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철도기사·철도신호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철도산업기사·철도신호산업기사 |
| | 소방·화학·건축·전기 학과 | ◇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포함)·화학과(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 포함)·전기학과(전기과, 전기공학과 포함)·건축학과(건축과, 건축공학과 포함)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유사 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소방·화학·건축·전기 각 분야별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

| 분 야 |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구 급 상 관 리 사 | 소 방 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중 4급으로 1년 이상 또는 5급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상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소 방 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상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구 급 (소방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구 조 (소방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 부대 근무경력자 중 특수훈련을 받은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
| 정보통신 (소방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통신설비기능장·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처리기사·무선설비기사·전파전자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정보보안기사·방송통신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방송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

5 시험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 체력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항공조종사 분야 : 실기시험 + 서류전형,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기타 분야 : 필기시험 + 체력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인(적)성 검사 + 면접시험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항공조종사 분야 제외)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11:00 (60분)]

| 구 분 | 분 야 | 시 험 과 목 |
|--------|---------|---|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경력경쟁채용 | 항공조종사 |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 대체) |
| | 항 해 사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 「영어」 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 | 기 관 사 | |
| | 언론공보 | |
| | 운항관리사 | |
| | 화재조사 | |
| | 소방특별조사 | |
| | 구급상황관리사 | |
| | 구 급 | |
| | 구 조 | |
| 정보통신 | | |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 과 목 | 출 제 범 위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 과 학 |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 수 학 | 수학 I,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아래 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분야 1.5배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구급분야 1.5배수, 구조분야 1.6배수, 소방특별조사분야 2.5배수, 기타분야 3배수 범위)

-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붙임 3 참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조종사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

«시험 일정 등»

- ◇ 시험일자 : 별도공고 【시험 기간 중 지정 일시에 응시해야 함】
- ◇ 주 관 : 소방청
- ◇ 평가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평가
- ◇ 평가내용 : 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 등 평가

나. 체력시험(항공조종사 분야 제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종목【붙임 4 참조】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10% 이내)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5~6 참조】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함)
단, 항공조종사 분야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서류전형 시 제출(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한다.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는 합격 처리
- 인(적)성검사 :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라.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인(적)성검사,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단, 항공조종사 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타 성별에서 선발함.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 가 산 비 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 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 의사상자 등 |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격증 (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

나.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모집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다.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9)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등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붙임 1】참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8. 4. 6. (금) 24:0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 원서 접수 시 **가산특전 자격의 종류 및 가산비율·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전대상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잘못 또는 허위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허위 또는 미(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등록) 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음.

- 라.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채점기(리더기) 인식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기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
- 바.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 시 OMR카드 리더기에서 오류사항(본인 귀책으로 인한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별, 책형, 분야코드, 공채 선택과목 코드 미인식) 발생 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031-329-0325~7)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사항

- 가.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붙임 1】
-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 2】
- 다.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붙임 3】
-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4】
- 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붙임 5】
- 바.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6】
- 사. 계급 환산 기준표 : 【붙임 7】

□ 문 의 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 전 화 : 031) 329 - 0325 ~7
- ▶ 홈페이지 : <http://www.fire.sc.kr>
-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봉명리)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의사항 : (주)진학어플라이

- ▶ 전 화 : 1544-7715
- ▶ 홈페이지 : <http://ggfire.jinhakapply.com>

경기도소방학교 시험정보 : <http://www.fire.sc.kr/> 시험정보 / 신규채용 / 공고고시

[부 록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 내 용 |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 | 2) 소방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 2) 연기 및 화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분 야 | | 내 용 |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 3]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 비교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부 록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제23조의2 관련)

|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 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 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 복 오 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비고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임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 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추후공지)**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속 6]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총 24종)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stanozolol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소변 바꿔치기 및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별첨 7]

계 급 환 산 기 준 표

| 구분 계급 |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별정 직공무원 | 경찰 공무 원 | 군인 | 교육공무원 | | | 정부관리 기업체 |
|--------------|------------------------------|---------------|----------------|----------------|---------|-------------|-----------------|
| | | | | 초·중·고등 학교교원 | 전문대학 | 4년제대학 교원 | |
| 소방령 지방소방령 | 5급 | | 소령 | 18~23호봉 | 13~18호봉 | 11~16호봉 | 과장 차장 |
| 소방경 지방소방경 | 6급 (3년이상) | | 대위 | 14~17호봉 | 11~12호봉 | 9~10호봉 | 계장,대리 (3년이상) |
| 소방위 지방소방위 | 6급 | 경위 | 중위 소위 준위 | 11~13호봉 | 9~10호봉 | 7~8호봉 | 계장,대리 |
| 소방장 지방소방장 | 7급 | 경사 | 상사 | 9~10호봉 | 8호봉이하 | 6호봉이하 | 평사원 (3년이상) |
| 소방교 지방소방교 | 8급 | 경장 | 중사 | 4~8호봉 | | | 평사원 |
| 소방사 지방소방사 | 9급 | 순경 | 하사 (병) | 3호봉이하 | | | 평사원 |

<비 고>

-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 등 한다.
-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 등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